

예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

1. 이용계약의 목적

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2. 계약기간

-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.
-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
3.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7.5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 단,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목으로 식사재료비 (간식비 포함)를 1식 2,500원으로 산정한다.
- ③ 장기요양서비스(주야간보호, 방문요양)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.
-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4.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

- 1)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(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) 종료 된다.
- 2)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. 다만,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
- 3)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- 1)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권리와 의무의 이행
- 2)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
- 3)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
- 4)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
* 문의 : 담당 김은경(010-6794-0089) 예은노인복지센터-063-232-2441~2

